

<부록 2> 과학교육진흥법시행령(제정)

과학교육진흥법시행령

[시행 1968.4.11] [대통령령 제3431호, 1968.4.11, 제정]

제1조 (목적) 이령은 과학교육진흥법(이하 "법"이라 한다)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과학교육심의회의 구성) ①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과학교육심의회(이하 "심의회"라 한다)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위원 30인 이내로 구성한다.

②위원장은 문교부차관이 되고, 부위원장 2인중 1인은 과학교육국장이 되며, 다른 1인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.

③위원은 경제기획원예산국장·재무부국고국장·상공부상역국장·과학기술처진흥국장과 과학교육과 관련이 있는 기관의 공무원 및 과학교육에 관한 학식·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문교부장관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.

제3조 (위원장 등의 직무) ①위원장은 회무를 통리하며, 심의회를 대표한다.

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,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4조 (심의회의 직능) ①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문교부장관에게 건의한다.

1. 과학교육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.
2. 과학교육의 내용 및 방법의 개선에 관한 사항.
3. 과학계교원의 양성 및 현직교육에 관한 사항.
4. 과학교재·실험·실습시설 및 실험·실습비보조에 관한 사항.
5. 과학관 및 과학센타의 조성과 기타 국민의 과학교육활동에 관한 사항.
6. 기타 문교부장관이 부의하는 과학교육진흥에 관한 사항.

제5조 (심의회의 회의) ①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

된다.

② 위원장은 문교부장관으로부터 회의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.

③ 회의는 재적위원과 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6조 (분과위원회) ① 심의회에 필요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 각분과위원회는 심의회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위원의 분과위원회 별배정은 위원장이 정한다.

③ 각분과위원회에 분과위원장 1인을 두되, 그 분과위원회의 위원중에서 호선한다.

④ 분과위원장의 직무에 관하여는 제3조제1항과 전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. 이 경우 "위원장"을 "분과위원장"으로, "심의회"를 "당해분과위원회"로 한다.

⑤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전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.

제7조 (보고) 위원장은 심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없이 문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8조 (전문위원) ① 심의회에 전문위원 약간인을 둘 수 있다.

② 전문위원은 과학교육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 중에서 문교부장관이 위촉한다.

③ 전문위원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과학교육에 관한 자료를 수집·조사·연구하며, 심의회와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.

④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문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9조 (간사와 서기) ① 심의회에 간사 1인과 서기 약간인을 둔다.

② 간사와 서기는 문교부소속공무원중에서 문교부장관이 임명한다.

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 및 각 분과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고,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.

제10조 (연구조성비의 범위) 법 제8조제2호에서 "연구조성비"라 함은 학술연구조성비·과학계교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재교육비, 과학교육실험·실습비 및 과학교육진흥단체의 육성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.

제11조 (기금의 운용)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과학교육기금(이하 "기금"이라 한다)은 문교부장관이 운용한다.

제12조 (회계연도)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.

제13조 (기금운용계획) ①문교부장관은 매회계연도개시전 1월이내에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
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제14조 (기금의 수입과 지출) 기금의 수입은 국가세출예산에 계상된 과학교육기금조성금·원조금·기부금 및 기금운용익금으로 하고, 지출은 법 제8조에 규정한 사업의 수행을 위한 경비로 한다.

제15조 (기금계정의 설정) 문교부장관은 한국은행에 과학교육기금계정을 설정하여야 한다.

제16조 (기금의 운용방법) ①기금은 금융기관에 예탁 또는 신탁할 수 있다.

②법 제8조에 규정한 사업의 수행을 위한 경비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예탁 또는 신탁에 의하여 얻는 익금의 범위안에서 지출하여야 한다.

제17조 (회계공무원) ①문교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의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그 소속공무원중에서 세입세출외기금출납명령관(이하 "기금출납명령관"이라 한다) 및 세입세출외기금출납공무원(이하 "기금출납공무원"이라 한다)을 임명하여야 한다.

②문교부장관은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면한 때에는 이를 재무부장관·감사원·한국은행총재 및 관계금융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제18조 (기금출납명령관의 임무) 기금출납명령관은 기금의 정수 및 그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.

제19조 (기금출납공무원의 임무) 기금출납공무원은 기금의 수납 및 그 지출원인행위에 따른 지출사무를 담당한다.

제20조 (회계공무원의 대리 및 분임) 문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

때에는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게 하거나 그 일부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대리 또는 분임회계공무원을 임명할 수 있다.

제21조 (겸직의 금지)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은 서로 겸할 수 없다.

제22조 (과학교육실험·실습비 및 시설비의 보조) ①과학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국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급학교에 과학교육을 위한 실험·실습시설비와 실험·실습비를 보조한다.

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국고보조의 기준은 실험·실습시설비에 있어서는 그 3분의 1이상, 실험·실습비에 있어서는 그 2분의 1이상으로 한다.

제23조 (시행규칙)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교부령으로 정 한다.

부칙 <제3431호, 1968.4.11>

①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②(폐지법령) 대통령령 제1,982호 과학교육심의위원회규정은 이를 폐지한다.